

大統領中心直選制改憲案検討事項

1987. 7.

大統領中心直選制改憲案檢討事項

I. 前文

制憲憲法의 前文檢討

<參考資料>

制 憲 憲 法

1948.7.12 制定
1948.7.17 公布

前 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打破하고 民主主義 諸制度를 樹立하여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 하며 各人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議하고 우리들의 正當 自由로히 選舉된 代表로서 構成된 國會에서 檀紀 4281年 7月 12日 이 憲法을 制定한다.

檀紀 4281年 7月 12日

大韓民國國會議長 李 承 晚

* 民主黨 前文 小妾名單과 主要研究課題
(이찬동 · 洪英基)

① 임시정부의 法統性

② 4.19 精神의 背景

* 抵抗權의 宣言

△ 基本權 伸張 精神

* 國是

△ 平和的 政權 交替

〈參考資料〉

現 行 憲 法	民 主 正 義 黨	新 韓 民 主 黨
前 文	前 文	前 文
<p>悠久한 民族史, 빛나는 文化, 그리고 平和愛護의 傳統을 자랑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 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을 계승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에 입각한 第5民主共和國의 출발에 즈음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p> <p>는 恒久的인 世界平和와 人類 共榮에 이바지 함으로써 우리 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하 는 새로운 歷史를 創造할 것 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 日에 制定되고 1960年 6月 15 日, 1962年 12月 26日과 1972 年 12月 27日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0年 10月 25日</p>	<p>悠久한 民族史, 빛나는 文化, 그리고 平和愛護의 傳統을 자랑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 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과 4. 19 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에 입각한 第5民主 共和國의 새로운 출발에 즈음 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 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 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 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 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p> <p>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 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 에 이바지 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 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 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 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 에 의하여 改正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 年 月 日</p>	<p>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 는 우리 大韓國民은 3.1 運動 의 崇高한 獨立精神과 4.19 義學의 民主理念을 繼承하고 祖國의 平和統一의 歷史的 使 命에 立脚하여 自由, 民主, 正 義를 더욱 鞏固히 하는 새로 운 民主共和國을 建設함에 있 어서 各人의 創意와 努力을 尊重하고 政治·經濟·社會·文 化의 모든 領域에 機會를 均 等히 하여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責任과 義務를 完遂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 生活의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 는 恒久的인 世界平和와 人類 共榮에 이바지 함으로써 우리 들과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期約하고 이</p> <p>憲法이 破壞되고 憲法에 確立 된 國民의 基本的 人權이 明 白하게 侵害될 경우 國民 스 스로 抵抗할 權利가 있음을 決意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된 이 憲法을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6年 月 日</p>

II. 總綱部分

國會提出된 民主黨改憲案에 對한다.

<參考資料>

現 行 憲 法	憲 法 改 正 試	
	民 主 正 義 黨	新 韓 民 主 黨
第 1 章 總 綱	第 1 章 總 綱	第 1 章 總 則
第 1 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 1 條 (現行과 같음)	第 1 條 (現行과 같음)
第 2 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의 要件은 法律로 정한다. ②在外國民은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 2 條 ①(現行과 같음) ②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國民을 보호할 義務를 진다.	第 2 條 (現行과 같음)
第 3 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附屬島嶼로 한다.	第 3 條 (現行과 같음)	第 3 條 (現行과 같음)
第 4 條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維持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②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한다.	第 4 條 (現行과 같음)	第 4 條 ①(現行과 같음) ②大韓民國의 國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하며, 어떠한 理由로도 政治에 介入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5 條 ①憲法에 의하여 締結·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에 대하여는 國際法과 條約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地位를 보장한다.	第 5 條 (現行과 같음)	第 5 條 ①이 憲法에 의하여 締結·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現行과 같음)

<p>第6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p> <p>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p> <p>(新 設)</p>	<p>第6條 (現行과 같음)</p>	<p>第6條 ①(現行과 같음)</p> <p>②(現行과 같음)</p> <p>③公務員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財産을 公開한다.</p>
<p>第7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p> <p>②政黨은 그 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p>	<p>第7條 (現行과 같음)</p>	<p>第7條 ①(現行과 같음)</p> <p>②(現行과 같음)</p>
<p>政治的 意思形成에 參與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p> <p>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의 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p> <p>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委員會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委員會의 決定에 의하여 解散된다.</p>		<p>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p> <p>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大法院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大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解散된다.</p>
<p>第8條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p>	<p>第8條 (現行과 같음)</p>	<p>第8條 (現行과 같음)</p>

III. 基本权分野

国会提出된 民主黨改憲案에 對하되, 案中 32條, 中 3項 國公營企業等이 容許하는 자의 團體行動權 制限은 다시 檢討한다.

<參考事項>

民主黨 基本權小委員會單外 主要研究課題

(許京萬, 吳正亨)

△ 拘束適否審

△ 保安處分

△ 事前令狀

△ 國家補償制度擴大

△ 言論·出版·集會·示威·結社의 自由擴大

△ 選舉權年令

△ 財產權保護

△ 勞動三權保障

△ 政黨活動保障

民主黨 經濟·社會·勞動小委員會單外 主要研究課題

(金錫鎬, 金完泰)

● 勞動者의 經營參考 → (民生 保障 基礎)

△ 國家의 環境保護政策

<參考資料>

現 行 憲 法	憲 法 改 正 試	
	民 主 正 義 黨	新 韓 民 主 黨
<p>第 31 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다만, 團體行動權의 行使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p> <p>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로 인정된 者를 제외하고는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질 수 없다.</p> <p>③國家·地方自治團體·國公營企業體·防衛産業體·公益事業體 또는 國民經濟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事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第 32 條 ① (現行과 같음)</p> <p>② (現行과 같음)</p> <p>③國家·地方自治團體·國公營企業體 또는 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第 30 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向上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 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p> <p>②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p> <p>③ (現行 第 2 項과 같음)</p>

<參考資料>

I. 與·野개헌안 「基本權」규정을 보고 (중앙일보 86.8.26)

張 明 奉
(國民大 副教授·憲法學)

與野의 改憲案이 확정됨으로써 基本權의 내용이 밝혀지게 되었다. 개헌안에 나타난 기본권의 골격을 보면 民正黨案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화, 모든 구속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제, 피의자의 체포·구금시 가족에의 통지 의무,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금지, 광범위한 刑事補償制, 형사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제, 최저임금제를 규정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질병 예방 및 의료보장 증진 의무, 국가의 주택개발정책 의무, 국가의 災禍로부터의 국민보호 의무, 국가의 신체장애자·노령자등 보호의무, 국가와 국민의 母性보호 의무, 국가의 여성과 청소년에 관한 복지정책 실시 의무등을 신설하여 사회보장·사회복지 조항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民正黨案은 기본권 분야에서는 발전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10개 市·道에서 헌법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론수렴 작업을 벌였던 民正黨으로서 權力構造 부분에서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진작 여론반영이 가능한 곳은 기본권 분야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음, 新民黨案의 기본권 골격을 보면 刑의 선고에 의한 保安 처분,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不認定,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下向조정, 군인·경찰등에 대한 二重배상금지 규정의 삭제, 의무교육을 초등교육에서 중학교교육까지로 연장, 국공영기업체·중요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유보 조항의 삭제,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필요 예산을 매년 계상, 環境權의 강화등을 들 수 있다.

특히 新民黨案은 저항권을 헌법 前文에 명시하였다는데 하나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이 헌법이 파괴되고 헌법에 확립된 국민의 기본적 人權이 명백하게 침해될 경우 국민 스스로 抵抗할 권리가 있음을 결의하면서」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新民黨案의 기본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民正黨案의 그것에 비해 未洽함을 감출 수 없다. 그렇게도 改憲을 주장하고 人權유린을 규탄하던 新民黨이 만든 기본권 조항이 막상 그 정도의 내용밖에 안되었다는 것을 보면, 그 동안 오직 권력구조에만 心血을 경주하였고 정작 民主化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한 기본적 人權보장에는 등한시 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民正黨案 역시 사회보장·사회복지 조항들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는 특기할만하나 조국통일까지 다시 개정하지 않아도 될 未來指向的 憲法이 탄생되기를 기대하는 案으로서의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불충분함을 느끼게 한다. 그러면 與野 兩黨案의 기본권 조항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를 들어보기로 한다.

첫째로 기본권 조항의 일반원칙 조항에 현행 헌법 제 9조의 규정외에 국민의 生命의 권리, 人格의 권리, 行動自由의 권리와 함께 국민의 알 권리, 입을 권리 및 들을 권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기의 알 권리, 입을 권리, 들을 권리는 국내외의 여러 情報源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人格형성을 위한 권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 이러한 알 권리등이 중시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幸福추구권과 더불어 이러한 기본권은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단체 및 개인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의 기본권 침해가 국가로부터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사회단체, 또는 개인등 私人に 의한 것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人身保護令狀 제도와 適法절차보장 규정이 신설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 조항에 이를테면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받은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인도되어야 하며 판사는 피의자에게 체포의 이유를 告知하고 異議를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들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任意同行·保護處分 등을 이유로 한 人身의 구금을 금지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이는 영장없는 사실상의 강제수사가 행해져온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세째로 선거권 연령은 新民黨案에서처럼 18세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다. 심지어 선거권 연령을 17세로 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네째로 교육조항에 교육의 自主性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외에 대학의 自治를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自治는 人事문제, 교육과정 편성등의 교육행정, 시설관리등에 있어서의 自治를 기본으로 한다.

다섯째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있어서 民正黨案은 여전히 국·공영기업체나 방위산업체에서 이를 유보시키고 있고 新民黨案은 공무원인 근로자의 勞動3權을 아직도 유보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여섯째로 근로자의 권리에 있어서 근로자의 기업경영 참가권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있어서의 利益配分均霑權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중 근로자의 이익배분균점권은 制憲憲法 (제 18조)에 벌써 규정되었던 것이다. 노동문제·분배문제의 해결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도 이제 이들 권리의 憲法的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改憲도 民主化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人權보장을 위한 것이라면 앞으로 국회 改憲特委에서는 기본권에 관한 보다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겠다. 오늘날 국가권력 구조는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수단 내지 장치로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겠다.

문득 「존·로크」의 말이 떠오른다. 『인간은 누구나 생명·자유 및 재산에 관한 고유의 自然權을 가졌으며 이 자연권의 보장을 위하여 人民간에 체결된 계약이 社會契約』이라고.

IV. 权力構造分野

1. 政府

- 大統領直選制로改正
- 副統領制新設檢討
 - 두는 경우 权限向題
 - 國會는 兩院制로 하는 경우 上院議長
 - ~~同院會議~~ 同會議는 두는 경우 그議長
 - ~~同院會議~~ 構成員
- 國務總理制는 現行대로 한다.
- 國務會議는 現行대로 ~~國務會議~~ ^{의결} 機關으로 한다.
- ~~國條中의 過半數이상 國會議員으로 任命하도록 한다~~
- 大統領의 國會解散權 ~~(削除) 檢討~~
- 大統領의 ~~非常大權~~ 戒嚴 ~~(非常措置)~~ 是 現行대로 한다.
- 大統領의 任期는 4年으로 하되, 1次重任할 수 있도록 한다.
- 一般國民投票制 認定

2. 國會

- 兩院制 檢討 → 單院
 - 上院議長는 副統領이 担当
- 國務總理·國務委員 個別 解任 國政權 認定
- 國政調查權은 現行을 原則으로 하되, 亦 強化 檢討
- 國會 任期 ~~(延長)~~ 檢討

3. 其他機關

- 監查院
「大總統所屬」消除之獨立機關化檢討
- 國政諮詢會議，平和統一政策諮詢會議存置檢討

<參考事項>

民主黨 權力構造小專名草案 主要研究課題
(新社著. 許京蔭)

- 大總統任期
- 副總統制新設
- 大總統权限調整
- 三權分立強化
- 國政監查權復活
- 比例代表制採決存否
- 國會會期延長

<參考資料>

憲法 權力構造部分

第3章 國 會

第31條 立法權은 國會가 行한다.

第32條 國會는 普通, 直接, 平等, 秘密選舉에 依하여 公選된 議員으로써 組織한다.

國會議員의 選舉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33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34條 國會의 定期會는 每年 1回 12月 20日에 集會한다.
當該日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翌日에 集會한다.

第35條 臨時緊急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 또는 國會의 在籍議員 4分之1 以上の 要求에 依하여 議長은 國會의 臨時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國會閉會中에 大統領 또는 副統領의 選舉를 行할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國會는 遲滯없이 當然히 集會한다.

第36條 國會는 議長 1人 副議長 2人을 選舉한다.

第37條 國會는 憲法 또는 國會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過半數로써 議決을 行한다.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境遇에 是 決定權을 가진다.

第38條 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但, 國會의 決議에 依하여 秘密會로 할 수 있다.

第39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第40條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로 移送되어 15日 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但,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異議書를 附하여 國會로 還付하고 國會는 再議에 附한다. 再議의 結果 國會의 在籍議員 3分之2 以上の 出席과 出席議員 3分之2 以上の 贊成으로 前과 同一한 議決을 한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써 確定된다. 法律案이 政府로 移送된 後 15日 以內에 公布 또는 還付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써 確定된다.

大統領은 本條에 依하여 確定된 法律을 遲滯없이 公布하여 야 한다.

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公布日로부터 20日을 經過함으로써 效力을 發生한다.

第41條 國會는 豫算案을 審議決定한다.

第 42 條 國會는 國際組織에 關한 條約, 相互援助에 關한 條約, 講和條約, 通商條約, 國家 또는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立法事項에 關한 條約의 批准과 宣戰布告에 對하여 同意權을 가진다.

第 43 條 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기 爲하여 必要한 書類를 提出케 하며 證人의 出席과 證言 또는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第 44 條 國務總理, 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은 國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 있으며 國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出席 答辯하여야 한다.

第 45 條 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고 議事에 關한 規則을 制定하고 議員의 懲罰을 決定할 수 있다.
議員을 除名함에는 在籍議員 3分之2 以上の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 46 條 大統領, 副統領, 國務總理, 國務委員, 審計院長, 法官 其他 法律이 定하는 公務員의 그 職務遂行에 關하여 憲法 또는 法律에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決議할 수 있다.

國會의 彈劾訴追의 發議는 議員 50人 以上の 連署가 있어야 하며 그 決議는 在籍議員 3分之2 以上の 出席과 出席議員 3分之2 以上の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 47 條 彈劾事件을 審判하기 爲하여 法律로써 彈劾裁判所를 設置한다.

彈劾裁判所는 副統領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하고 大法官 5人과 國會議員 5人이 審判官이 된다. 但, 大統領과 副統領을 審判할 때에는 大法院長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한다.

彈劾判決은 審判官 3分之2 以上の 贊成이 있어야 한다.

彈劾判決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但, 이에 依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第 48 條 國會議員은 地方議會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第 49 條 國會議員은 現行犯을 除한 外에는 會期中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하며 會期前에 逮捕 또는 拘禁되었을 때에는 國會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第 50 條 國會議員은 國會內에서 發表한 意見과 表決에 關하여 外部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4章 政 府

第1節 大統領

第51條 大統領은 行政權의 首班이며 外國에 對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第52條 大統領이 事故로 因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副統領이 그 權限을 代行하고 大統領, 副統領 모두 事故로 因하여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가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53條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會에서 無記名投票로써 各各 選舉한다.

前項의 選舉는 在籍議員 3分之2 以上の 出席과 出席議員 3分之2 以上の 贊成投票로써 當選을 決定한다. 但, 3分之2 以上の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二次投票을 行한다. 二次投票에도 3分之2 以上の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最高得票者 2人에 對하여 決選投票을 行하여 多數得票者를 當選者로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國會議員을 兼하지 못한다.

第54條 大統領은 就任에 際하여 國會에서 左의 宣誓을 行한다.

「나는 國憲을 遵守하며 國民의 福利를 增進하며 國家를 保衛하여 大統領의 職務를 誠實히 遂行할 것을 國民에게 嚴肅히 宣誓한다.」

第55條 大統領과 副統領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但, 再選에 依하여 一次重任할 수 있다. 副統領은 大統領在任中 在任한다.

第56條 大統領, 副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任期가 滿了되기 30日前에 그 後任者를 選舉한다.

大統領 또는 副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即時 그 後任者를 選舉한다.

- 第 57 條 內憂, 外患, 天災, 地變 또는 重大한 財政, 經濟上의 危機에 際하여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緊急한 措置를 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餘裕가 없는 境遇에 限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진 命令을 發하거나 또는 財政上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前項의 命令 또는 處分은 遲滯없이 國會에 報告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萬一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하며 大統領은 遲滯없이 此를 公布하여야 한다.
- 第 58 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一定한 範圍를 定하여 委任을 받은 事項과 法律을 實施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命令을 發할 수 있다.
- 第 59 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하고 批准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行하고 外交使節을 信任 接受한다.
- 第 60 條 大統領은 重要한 國務에 關하여 國會에 出席하여 發言하거나 또는 書翰으로 意見을 表示한다.
- 第 61 條 大統領은 國軍을 統帥한다. 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써 定한다.
- 第 62 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 第 63 條 大統領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赦免 減刑과 復權을 命한다. 一般赦免을 命함에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第 64 條 大統領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戒嚴을 宣布한다.
- 第 65 條 大統領은 勳章 其他 榮譽를 授與한다.
- 第 66 條 大統領의 國務에 關한 行爲는 文書로 하여야 하며 모든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國務委員의 副署가 있어야 한다. 軍事에 關한 것도 또한 같다.
- 第 67 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때 以外에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2節 國務院

第68條 國務院은 大統領과 國務總理 其他의 國務委員으로 組織되는 合議體로서 大統領의 權限에 屬한 重要國策을 議決한다.

第69條 國務總理는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會의 承認을 受어야 한다. 國會議員總選舉後 新國會가 開會되었을 때에는 國務總理任命에 對한 承認을 다시 受어야 한다.

國務委員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國務委員의 總數는 國務總理를 合하여 8人以上 15人以內로 한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第70條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된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副議長이 된다.

第71條 國務會議의 議決은 過半數로써 行한다.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境遇에 是 決定權을 가진다.

第72條 左의 事項은 國務會議의 議決을 經하여야 한다.

1. 國政의 基本的 計劃과 政策
2. 條約案, 宣戰, 講和 其他 重要한 對外政策에 關한 事項
3. 憲法改正案, 法律案, 大統領令案
4. 豫算案, 決算案, 財政上의 緊急處分案, 豫備費 支出에 關한 事項
5. 臨時國會의 集會要求에 關한 事項
6. 戒嚴案, 解嚴案
7. 軍事에 關한 重要事項
8. 榮譽授與, 赦免, 減刑, 復權에 關한 事項
9. 行政各部間의 連絡事項과 權限의 劃定
10. 政府에 提出 또는 廻付된 請願의 審査
11. 大法官, 檢察總長, 審計院長, 國立大學總長, 大使, 公使, 國軍總司令官, 國軍參謀總長, 其他 法律에 依하여 指定된 公務員과 重要國營企業의 管理者의 任免에 關한 事項
12. 行政各部의 重要한 政策의 樹立과 運營에 關한 事項
13. 其他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하는 事項

第 3 節 行政各部

第 73 條 行政各部長官은 國務委員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行政各部長官을 統理監督하며 行政各部에 分擔되지 아니한 行政事務를 担任한다.

第 74 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長官은 그 担任한 職務에 關하여 職權 또는 特別한 委任에 依하여 總理令 또는 部令을 發할 수 있다.

第 75 條 行政各部의 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 5 章 法 院

第 76 條 司法權은 法官으로써 組織된 法院이 行한다.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下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써 定한다.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 77 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 78 條 大法院長인 法官은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79 條 法官의 任期는 10 年으로 하되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連任할 수 있다.

第 80 條 法官은 彈劾, 刑罰, 또는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 停職 또는 減俸되지 아니한다.

第 81 條 大法院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命令, 規則과 處分이 憲法과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를 最終적으로 審査할 權限이 있다.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에 前提가 되는 때에는 法院은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依하여 裁判한다.

憲法委員會는 副統領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法官 5 人과 國會議員 5 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憲法委員會에서 違憲決定을 할 때에는 委員 3 分之 2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憲法委員會의 組織과 節次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 82 條 大法院은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 83 條 裁判의 對審과 判決은 公開한다. 但, 安寧秩序를 妨害하거나 風俗을 害할 念慮가 있는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써 公開를 아니할 수 있다.

V. 法院

- ◎ 大法院長・大法官의 法官 任期에 對하여의 提出 檢討
- ◎ 大法院長 任期 6年으로 不連任
- 違憲法律 審査權을 民正黨 國會 提出 案으로 提을 原則으로 하여 別 行 轉 構 設置 檢討
- × 憲法 委員會의 存置 및 機能을 民正黨 國會 提出 案으로 檢討

VI. 經濟 條項

- 民正黨 國會 提出 案으로 檢討

VII. 憲法 改正

- 民正黨 國會 提出 案으로 檢討

< 參考 事項 >

民主黨 法院 小 專 名單 및 主要 研究 課題
(吳 正 學, 洪 英 基)

△ 人事 獨立 性

△ 予算 自律 權

△ 違憲 審査 權 및 政黨 解散 權, 彈劾 決定 權 問題

○ 附則 其他

(許 京 鼎, 吳 正 學)

△ 政 治 報 告 權 及 監 督 權 等 關 係 諸 項

△ 改 憲 確 定 節 次